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책무, 실태조사 신설 및 급여비용 산정 개선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0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책무	4
2.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의무 신설	6
3.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8
4.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13
III . 보건복지부 의견	16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 (2)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 (4)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에 대

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5)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책무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¹⁾(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함)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²⁾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임(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
요).³⁾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
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장애인 등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직접 서비스
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장기적 관
점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보임.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를 말한다.

2.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의무 신설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현행 「장애인활동법」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이러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이를 실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①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② 수급자의 규모,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③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④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함.

□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동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효율적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실시 및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장애실태조사’⁴⁾에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하므로, 조사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 개정안은 ①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 근로환경개선 및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하며, ②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 시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⑦ (생략)</u>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 ----- -----한다) 중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구분하여 -----

② ~ ④ (생략)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최근 활동지원사업 관련 현황을 보면, 활동지원사의 경우 2020년 84,854명에서 2024년에는 117,310명으로, 활동지원기관은 2020년 952개소에서 2024년에는 1,109개소로, 국비 예산은 2020년 1조 3,014억원에서 2024년에는 2조 2,846억원으로 인력, 제공기관, 예산 등 그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인력의 처우 및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등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활동지원사(명)	84,854	95,046	103,378	112,570	117,310
활동지원기관(개소)	952	1,002	1,027	1,076	1,109
예산(국비, 억원)	13,014	15,216	17,425	19,918	22,846

주1):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 70%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에서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참고자료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지급 받은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등 관

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 청구·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일정액의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을 뿐, 활동지원기관의 준수 여부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 권장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운영비의 경우에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과 지원인력 간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 규율사항으로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

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2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7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u>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u> 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 <u>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u>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① 재무·회계 기준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하거나, ②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활동지원기관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 참고로, 재무·회계기준은 현행법 제22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Ⅲ. 보건복지부 의견

□ (실태조사) 활동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신설 필요성에 동의,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실태조사가 시행 중으로 이에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

□ (인건비, 운영비 분리) 장애인활동지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과 시장 원리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 필요량, 필요 시간대에 따라 바우처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함.

- 따라서 이러한 바우처 제도 특성상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되어 있으며, 급여비용(서비스 단가)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물가상승율, 최저임금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 : ('22) 9,160원(+5.1%) → ('23) 9,620원(+5.0%) → ('24) 9,860원(+2.5%)
활동지원단가 : ('22) 14,805원(+5.6%) → ('23 예산) 15,570원(+5.2%) → ('24) 16,150원(+3.7%)

□ 또한,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간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규율 사항으로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인력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민간의 근로계약관계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며, 위반 시 이에 따라 처벌되는 등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는 사항임.

- 활동지원 사업지침에서는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적정(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또한 고려하여 활동지원 급여비용 산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 최소 약 60시간(971천 원) ~ 최대 약 480시간(7,754천 원)
 -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7,754천 원 (약 480시간)	7,269천 원 (약 450시간)	6,785천 원 (약 420시간)	6,301천 원 (약 390시간)	5,816천 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332천 원 (약 330시간)	4,845천 원 (약 300시간)	4,362천 원 (약 270시간)	3,878천 원 (약 240시간)	3,393천 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909천 원 (약 180시간)	2,424천 원 (약 150시간)	1,940천 원 (약 120시간)	1,456천 원 (약 90시간)	971천 원 (약 60시간)
특별 지원 급여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0.4천 원 ~ 200.2천 원)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25천 원~1,294천 원(약 20~80시간) 최대 6개월				
	본인 부담	면제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구 분	대상자 (A)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합계	
		이용 자(B)	이용 률 (C) (C=B/A)	이용 자(D)	이용 률 (E) (E=D/A)	이용 자(F)	이용 률 (G) (G=F/A)	이용 자(H)	이용 률 (I) (I=H/A)
2020	118,125	99,784	84.5%	2,375	2.0%	241	0.2%	102,400	86.7%
2021	130,160	109,010	83.8%	2,714	2.1%	237	0.2%	111,961	86.0%
2022	142,159	117,894	82.9%	2,869	2.0%	230	0.2%	120,993	85.1%
2023	155,602	128,478	82.6%	2,987	1.9%	263	0.2%	131,728	84.7%
2024.6.	158,876	130,135	81.9%	2,755	1.7%	222	0.1%	133,112	83.8%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6,150원/시간('24년 기준)
- 예산 : ('23) 19,919억원(115,000명) → ('24) 22,846억원(123,715명, +8,715명 증)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일 최대 8시간 초과 시 ① 적용)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가산수당은 최종증 수급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추가로 지급

2. 방문목욕(※ 주 1회 원칙)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3. 방문간호(※ 주 3회 원칙)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30분 미만	40,76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③ 60분 이상	61,490원

자료: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